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안

검 토 보 고

〈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51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2. 총칙	9
가. 정의	9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3.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12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2
나. 민간의 정책 참여 등	17
다. 실태조사	18
라.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20
마. 전문기관	23

4. 디지털역량의 함양	26
가. 디지털역량의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26
5.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30
가.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등	30
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33
다.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지원 등	36
6.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39
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39
7. 보칙	41
가. 재원의 조달, 포상, 세제지원 등	41
8. 부칙	4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08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17.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0조).

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세제 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 중이며, 지능정보기술과 각 산업 분야의 디지털 융합으로 개인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어려움 없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역량 수준 역시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전환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디지털역량이 부족한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디지털격차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지능정보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수 국민들을 위한 포용적 지식정보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 6월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및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내용을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하여 발표한 바 있음¹⁾.

1) 2020년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국민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

- 한편, 디지털포용 정책의 법적 기반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01년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정보화촉진기본법」과 함께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된 후 현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²⁾에 이르고 있는데,
-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개발·확산 촉진과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선도적·진흥적 성격의 법률로서, 정보격차해소 시책의 마련,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시행,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관한 단편적인 규정들만을 두고 있어, 고도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누구나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는 디지털포용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본 제정안은 디지털포용 등 주요 정책개념 정의,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디지털역량 함양, 접근성보장 및 포용산업육성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종전의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년도의 경우 전국민 디지털역량 강화 관련 예산 757억원 등 총 808억원의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2)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년 6월 전부개정되면서('20. 12. 10. 시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

해소 정책에서 나아가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스스로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의 혜택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강병원의원³⁾과 박성중의원⁴⁾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용과 본 법안이 취지로 삼고 있는 바가 유사한 바, 어떠한 측면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별도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동 제정안은 6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 「디지털포용법안」에 대한 비교는 다음 <표>를 참조 바람.

3) [2107422] 디지털포용법안(강병원의원 등 15인), 2021.1.15.

4) [2118437] 디지털포용법안(박성중의원 등 11인), 2022.11.23.

< 「지능정보화 기본법」 과 「디지털포용법안」 비교 >

지능정보화기본법 (정보격차 해소 관련 부분)	디지털포용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디지털포용정책의 추진체계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	제8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67조(연차보고 등)	제9조(실태조사 등)
-	제10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11조(전문기관)
-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	제13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15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46조의2(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17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19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0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지원)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제22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	제23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	제24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
-	제25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지원)
-	제26조(전문인력 양성)
-	제6장 보칙
-	제27조(재원의 조달)
	제28조(포상)
-	제29조(세제지원)
-	제30조(국제협력)
-	제31조(위임 및 위탁)
-	제32조(과태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7

2. 총칙

가. 정의

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제정안의 핵심용어인 “디지털포용”을 “사회적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으로 정의하고 있음.

본 제정안 목적이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임을 고려할 때, “디지털포용”의 개념에 종전의 취약계층 중심의 정보 활용역량 강화 및 정보 접근성 보장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기업·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디지털 포용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디지털 포용의 핵심적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봄.

-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와 달리 ‘지능정보제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의 규정(제2조)5)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괄호 설명을 추가한 점 또한 타당하다고 보임.
- 해당 조문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격차의 해소,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의 용어 비해 디지털포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객관적인 표현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의와 조문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5조는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 간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동 조와 같이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본 제정안이 기본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규정하여 두 법률 사이에 해석 및 집행상 모순이나 저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임.

3.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 정 안

제6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표준화·수출지원

6.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7.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 성과 분석

9.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1.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12.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디지털포용 증진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2항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6)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대통령령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 략)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⁷⁾에서는 기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바,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기 설치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심의하게 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⁸⁾

- 다만, 안 제6조제2항에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 주체의 명확화 등의 측면에서 “확정”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7.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의2. 제27조의4에 따른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참고로 2020년 6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 또한 안 제7조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은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촉진 등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연계하여 수립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수립 주체와 과정이 디지털포용 시행계획과 유사하여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됨.

나. 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 정 안
제8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안 제8조는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 국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기관등으로 하여금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사회·경제 전 영역의 디지털화로 인해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 집행은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 바, 제정안은 타당한 취지를 가진다고 보임.⁹⁾

9) ※ 유사 입법례

「과학기술기본법」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실태조사

제 정 안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보격차 수준 및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4.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관련 기업·법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

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9조는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포용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 문제점, 지원방안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인바 제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정보격차 수준 및 현황,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등으로 실태조사 범위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점 또한 타당하다고 보임.
- 한편, 제정안은 민간 자료 수집을 위해 “관련 기업·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의무가 발생하여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공개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라.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 정 안

제10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자체 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0조는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 제품·서비스 신규 도입·개발·구축 또는 디지털 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실시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체 영향

평가”(안 제10조제1항)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안 제10조제2항) 등 디지털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과기정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0조제4항)

—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개요 > —

- (자체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 제품·서비스 신규 도입·개발·구축 또는 디지털 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 실시
- (개별 영향평가)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제품·서비스에 대해 평가 실시

-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디지털 차별·소외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마. 전문기관

제 정 안

제11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 디지털포용 관련 법·제도 연구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분석·평가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8. 제10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 지원
9. 제13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지원
10. 제18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11. 제20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지능정보

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다.

○ 안 제11조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디지털포용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¹⁰⁾에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관리·유통·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따라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
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도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를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시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4. 디지털역량의 함양

가. 디지털역량의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 정 안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교구(敎具)·교재의 개발·보급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3.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지원
4.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조사·보급 및 연구
5.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6.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디지털 문제에 대한 해결 지원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⑤ 국가는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운영·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역량 교육 실시와 같은 사업 수행,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는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2조는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11)의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규정을 전 국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본 제정안의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에 맞게 확대하여 규정한 것임.

- 안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제2항제1호의 범위보다 넓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추가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는 차이가 있어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예를 들어 학습장애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유이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에는 미포함됨.

- 한편, 안 제12조제4항제3호에서는 디지털역량교육이 포함할 요소의 하나로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관해서는 본 제정안이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정의 조항이 없고, 다른 조항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디지털 과의존’,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 예시사항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가.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등

제 정 안

제1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
제품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7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
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
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
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등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
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6조는 국가기관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
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

제품의 종류·지침 고시 의무 등을 규정함.

-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¹²⁾(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 내용 중 일부를 이관하여 규정함.

○ 안 제17조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

-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¹³⁾(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규정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함.

1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
-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6조의2(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 정 안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해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는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는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¹⁴⁾ 규정을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지능

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5년(안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신설(안 제18조제4항)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규정한 것임.

- 접근성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가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설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임.

<인증 유효기간 관련 유사 입법례>

- **식품의약품검사법 제7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가족친화법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지원 등

제 정 안

제20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제품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절차·유효기간,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지정취소·유효기간, 시험평가기준,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20조는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과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선구매 실적 제출 요구,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종류 지정,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¹⁵⁾에서 ‘국가기관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한 내용을 확대·보완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행 규정에서 제2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에 대한 제출 요청’), 제3항(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지정·고시), 제4항 및 제5항(우선구매 대상 제품에 대한 검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는 바,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안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유·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제3항 및 제4항¹⁶⁾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한 것임.

1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생략)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략)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생략)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제 정 안

제23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23조는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등을 규정함.

○ 이는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관하면서¹⁷⁾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 편의 향상에 초점을 두어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라고 규정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임.

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보칙

가. 재원의 조달, 포상, 세제지원 등

제 정 안
제27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정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자원 조달, 포상, 세제지원 등의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이러한 조문들은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및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7조제2항의 경우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 재정지원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해당 분야가 재정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정부에 폭넓은 재량을 주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¹⁸⁾에 대해 살펴본 후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28조의 경우 포상의 지급 대상, 절차 및 범위 등을 다소 포괄적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도의 자의적 운영 방지 등의 측면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등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¹⁹⁾
- 안 제29조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고,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인 바²⁰⁾ 개정안의 경우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8)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9, p.452.

19) 참고 입법례: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부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며, 인증업무의 범위는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 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69조제2항제4호 및 제70조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본 제정안이 시행되면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는 삭제되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관계 및 각 법률상 검증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검증의 효력 인정 여부 및 그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4조)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또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므로, 해당 법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부칙 제6조제3항의 타법 개정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
